

「늘~하나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늘~하나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한다.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5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이후 납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한다.

제6조 적립방법

- ①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 이상으로 한다.
-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7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한다. 단,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만기시점까지 KEB하나은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59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1%의 우대금리를, 5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5%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약정기간이 3년제인 고객이 만기시점까지 KEB하나은행 요구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35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6%의 우대금리를, 3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전 3개월이내 주택취득 또는 청약당첨 경우 가입시점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로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때는 은행에서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 시점의 3년제 상호부금 금리로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④ 이 예금을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KEB하나은행에서 다음 거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연0.2%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 1. 급여 이체 시 (0.1%)
 - 2. 관리비 이체 시 (0.1%)
 - 3.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점대금 이체 시 (0.1%)
 - 4. 하나카드 결제대금을 KEB하나은행 계좌로 결제 시 (0.1%)
 - 5.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0.1%)
- ⑤ 이 예금은 KEB하나은행을 3년 이상 거래하고, 가입일 현재 잔액이 있는 고객(요구불예금-한도대출 포함, 저축성예금, 또는 신탁) 또는 만기 시 불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최대 연0.2%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